

헌법 9 조 해석변경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결정(閣議決定)에 항의하는 성명

1 주둔 미군 · 자위대는 헌법 9 조의 전쟁 포기 · 전력 불 보유 규정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헌법 9 조 해석은 1954 년 자위대 발족 후 ‘자위력’=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론의 기초에 두고 자위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여 왔다. 그 ‘자위력’ 론을 따른다 하여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자위력’ 보다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왔다.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무력행사 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은 합헌이라 하더라도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무력행사를 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합헌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여겨져 왔다. 이 해석은 54 년에 정부 측 답변 속에서 표현되었고, 72 년 10 월 14 일 정부 제출 자료에 의해 확립 된 것이다. 54 년부터 세어보면 60 년, 72 년부터 세어보아도 4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헌법 9 조와 주둔 미군 · 자위대 위헌론의 존재 하에서 적어도 이 집단적 자위권 부인해석은 헌법 9 조의 규범성의 핵심을 사실상 이루고 있으며, 전후 일본 사회 있어서 ‘국가의 통치 기본을 정한 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을 해왔다.

2 그런데 2014 년 7 월 1 일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 9 조 해석의 변경을 의결했다. 그것은 개별적 자위권 · 집단안전보장 관계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포함한다. ‘헌법 제 9 조에 따라 허용되는 자위조치’ 에 대하여, ‘종래의 정부 견해의 헌법 제 9 조의 해석의 기본적인 논리의 틀 안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위의 72 년 자료를 기초에 둔다. 이 자료는 ‘일본 스스로의 존립’ 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 라고 말하는 것처럼, 54 년부터 개별 자위권에 의한 ‘자위력론’ 의 흐름 속에 있다. 더욱이 ‘자위를 위한 조치’ 는 ‘필요최소한도’ 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집단적 자위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위헌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각의결정은 ‘자위를 위한 조치’ 의 추상성을 이용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되지 않는 ‘필요최소한도’ 의 ‘무력 행사’ 가 허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집단적 자위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고 있다. 각의결정에 말한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부인에서 용인으로의 전환이 ‘기본적인 논리의 틀’ 에 있다고 하는 주장에 ‘논리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이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더욱이 각의결정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상 허용된다’ 고 한다. 각의결정에 말한다.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추가 된 요건은, ‘미일 동맹의 역지력’ 의 ‘향상’ 등이 강조되게 되면 확장적으로 운용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헌법해석이 변경 될 수도 있다. ‘위의

“무력 행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 헌법상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한 자위 조치로서 처음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있어서 무력 행사는 개별적 자위권에 의한 것인 인상을 주면서 집단적 자위권 계다가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의결정은 국민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서 알아채기 힘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나란히 항해하는 미국 군함의 호위 등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중심으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는 군사적으로 사실상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정당화 된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미국이 한 전쟁이다. 실제로 가장 있을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이러한 전쟁의 전선에서 자위대에게 전투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로 참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의 정치적 본질이며 일본, 아시아, 세계의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헌법 9 조의 규범적 의미의 핵심을 각의결정에 의해 빼앗으려 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저촉된다. 또한 국민적 토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부인을 중심으로 군사를 억제하는 9 조의 평화주의는 가치 있는 것이며,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해석 변경은 물론, 그 다음 단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해금의 명문개헌도 해서는 아니 된다.

5 각의결정 후, 우선 연내에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이 예정되어 지침에 의한 국회 심의의 실질적 구속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 73 조 3 호에 의해 조약 체결에 대한 승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외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지침에 나타나는 문제를 추궁 할 책임이 있다. 또한 내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구체화하는 법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각의결정에 의한 국회 심의의 실질적 구속이 예상되지만, 국회는 내각결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포함 된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타국과의 ‘밀접한 관계’와 국가의 존립 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의 의미를 추구하고 각의결정을 철회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가 된다.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과 결부하여 국민은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비판하는 운동을 본격화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6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법률부회는 규약에서 ‘민주주의 법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학회이다. ‘민주주의 법학’의 입장에서 명문 ‘개헌’뿐만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을 포함하여 ‘개혁’의 동향도 대상으로 하여 학문활동을 쌓아왔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따른 사회의 군사화는 학회활동의 전제가 되는 자유, 따라서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법률부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9조 해석변경의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 실현을 저지 하는 것에 전력으로 임하는 것을 맹세하며, 여기 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2014年7月20日

민주주의 과학자협회 법률부회 이사회